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6 광주

참 가 요 강

2026



경기도체육회
GYEONGGI-DO SPORTS COUNCIL

목 차

■ 대회개요(취지, 일반사항, 시상, 개·폐회식)	3
■ 참가요령	10
1. 경 기 방 법	10
2. 심판 및 경기규칙	10
3. 채 점 방 법	11
4. 순위결정방법	11
5. 직장운동경기부	12
6. 참 가 자 격	15
7. 참 가 신 청	17
8.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19
9. 시·군 대표자회의	19
10. 기 타 사 항	19
■ 참가요강 변경사항	21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27
1. 육 상	29
2. 수 영	32
3. 축 구	33
4. 테 니 스	34
5. 소프트테니스	35

6. 배 구	36
7. 탁 구	37
8. 복싱	38
9. 역도	39
10. 씨름	41
11. 유도	43
12. 검도	45
13. 궁도	46
14. 배드민턴	48
15. 태권도	49
16. 볼링	51
17. 골프	52
18. 보디빌딩	53
19. 우슈	55
20. 사격	56
21. 당구	58
22. 농구	59
23. 바둑	60
24. 레슬링	61
25. 야구	62
26. 산악	63
27. <u>댄스스포츠</u>	64
■ 총포소지허가 관련 규정	65

대 회 개 요

취 지

경기도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우의와 체위를 향상시켜 향토 체육의 발전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로 신인 선수를 발굴하며,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

일반사항

1. 대회기간: 2026. 4. 16(목) ~ 4. 18(토) / 3일간
2. 개최지: 광주시
3. 주 최: 경기도체육회
4. 주 관: 광주시 / 광주시체육회 / 경기도종목단체
5. 경기종목: 27개 종목

정식 종목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골프, 보디빌딩, 우슈, 사격, 당구, 농구, 바둑, 레슬링(1부), 야구
시범 종목	레슬링(2부), 산악, 댄스스포츠

6.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번호	구분 종 목		일반부		고 등 부		비 고
			남	여	남	여	
1	육	상	○	○	○	○	
2	수	영	○	○			
3	축	구	○	○			
4	테	니 스	○	○			
5	소프트테니스		○	○			
6	배	구	○	○			
7	탁	구	○	○			
8	복	싱	○				
9	역	도	○	●			
10	씨	름	○				
11	유	도	○	●			
12	검	도	○	○			
13	궁	도	○				
14	배 드 민 턴		○	○			
15	태 권 도		○	○			
16	볼	링	○	○			
17	골	프	○	○			
18	보 디 빌 딩		○	●			
19	우	슈	○				
20	사 격(트랩)		○				
21	당	구	○	○			
22	농	구	○				
23	바	둑	○	○			
24	야	구	○				
25	레 슬 링		○				1부 정식/2부 시범
26	산	악	●	●			
27	댄 스 스 포 츠		●				

시 상

1. 종합시상

- 1부 대항: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 2부 대항: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2. 종목별 시상

- 종목별 1, 2, 3위에 우승배 및 상장 수여

3. 개인 및 단체 시상

- 개인 및 단체팀 1, 2, 3위에 상장 및 메달 수여

4. 성취상 시상

- 전년도 종합성적 대비 현 연도 종합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
(1부·2부에 1, 2, 3위 성취상배 수여)

5. 모범선수단상

- 대회 및 경기장 질서에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모범상배 수여

6. 경기단체 질서상

- 경기장 질서 및 대회운영을 잘한 경기단체에 질서상배 수여

7. 최우수선수상(MVP)

- 개인 및 단체팀 선수 중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정, 수여

개·폐회식

1. 개회식

가. 일 시: 2026. 4. 16.(목) 16:00 [예정]

※ 사전행사: 2026. 4. 16.(목) 15:00 [예정]

나. 장 소: 광주시 G-스타디움

다. 공식행사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분)		
15 : 55	16 : 00	5	내빈입장	
16 : 00	16 : 02	2	개식통고	
16 : 02	16 : 37	35	시·군 선수단 입장	
16 : 37	16 : 40	3	국민의례	
16 : 40	16 : 41	1	개회선언	광주시체육회장
16 : 41	16 : 43	2	대회기 게양	승리의 노래
16 : 43	16 : 48	5	성화점화	
16 : 48	16 : 52	4	환영사	광주시장
16 : 52	16 : 56	4	대회사	경기도체육회장
16 : 56	17 : 12	16	축사	
17 : 12	17 : 15	3	선수단 및 심판대표 선서	
17 : 15	17 : 18	3	경기도의 노래 제창	
17 : 18	17 : 23	5	선수단 퇴장	

※ 시간 및 식순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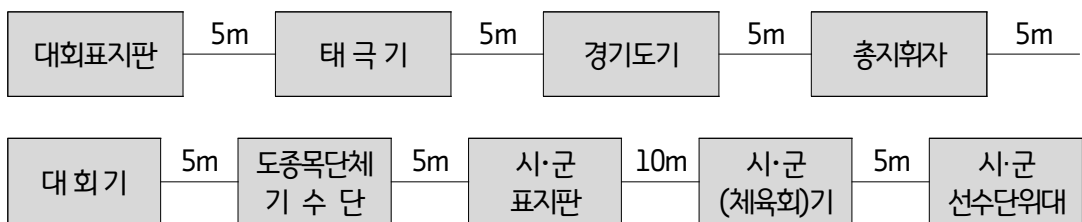
라. 시·군 선수단 입장

- 1) 시·군 대표선수 1인이 소속된 시·군체육회기를 들고 입장한다.
- 2) 입장 순서는 시·군 대표자회의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개회식 입장요령

- 1) 경의 표시는 본부석 앞 제1표기선부터 제2표기선까지로 한다.(거리 20m)
- 2) 단위대 지휘자는 제1표기선에서 제2표기선까지 자연스럽게 행진하면서 시·군별로 통일된 동작으로 경의를 표시하며 통과한다.
- 3) 태극기는 사열하지 않는다.
- 4) 경기도기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 5) 대회기는 총지휘자가 제1표기선에서 경례를 하면 기를 위로 들어올린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 6) 시·군 선수단 기수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바. 입장 시 행진대행



사. 정렬 시 요령

- 1) 선수단 정렬 시 앞 사람과의 거리는 1m를 유지하며 옆 사람과의 거리는 20cm를 유지한다.
- 2) 시·군 선수단이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진입할 때 기수는 정해진 위치에서 멈춘다.

- 3) 시·군 기수단 입장이 완료되면 태극기와 경기도기는 본부석 밑으로 퇴장한다.
- 4) 표지판수, 시·군 체육회 기수, 도종목단체 기수는 깃봉의 하단을 지면에 대고 “쉬어” 자세를 취한다.
- 5) 대회기 기수는 대회기 게양대 앞에서 기폭을 팽팽하게 잡고 부동자세를 취한다.

아. 국민의례

- 1) 내빈과 관중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일어나 국기를 향한다.
- 2) 기수는 국기를 향한 다음 기를 45도 굽혀 경례한다.

자. 퇴장요령

- 1) 대회 표지판수는 정면으로 퇴장한다.
- 2) 시·군기수단은 본부석 중앙선을 기점으로 좌측은 좌측문으로, 우측은 우측 문으로 퇴장한다.

차. 개회식 입장 단위대 집결요령

- 시·군 기수단은 개회식 당일 14:00(예정)까지 광주시 G-스타디움에 집결하여 입장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다.
- ※집결시간 및 입장인원 확정 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폐회식

가. 일 시: 2026. 4. 18.(토) 18:00 [예정]

※ 사전행사: 2026. 4. 18.(토) 17:30 [예정]

나. 장 소: 탄벌동 실내체육관

다. 공식행사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 (분)		
18 : 00	18 : 01	1	개식통고	사 회 자
18 : 01	18 : 04	3	국민의례	
18 : 04	18 : 07	3	성적발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18 : 07	18 : 27	20	종합시상	
18 : 27	18 : 31	4	폐 회 사	경기도체육회장
18 : 31	18 : 33	2	대회기 전달	광주시체육회장 — 경기도체육회장 — 오산시체육회장
18 : 33	18 : 37	4	환 송 사	광주시장
18 : 37	18 : 41	4	인사말씀	광주시의회 의장
18 : 41	18 : 42	1	폐회선언	

※ 시간 및 식순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참 가 요 령

1. 경기방법

- 가. 각 종목별 1부·2부, 시·군대항전으로 한다.
- 나. 경기진행은 종목별로 7개 시·군 이상이 참가하여야 경기를 실시하며, 1부·2부 혼성경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 다.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단체경기 및 개인·단체경기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seed)는 개최지 시·군에만 배정한다.
- 라. 경기는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 마. 1부·2부 구분기준: 인구기준(2025년도 12월말 기준)
 - 1) 개최지가 속한 부 15개 시·군
 - 2)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 16개 시

2. 심판 및 경기규칙

-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 나. 각 종목별 위원장 및 심판, 운영요원은 ID카드를 착용하여 경기운영의 신뢰성을 확립한다.
- 다. 종목별 경기운영은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 라.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우천을 대비하여 차선책 등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채점방법

가. 채점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한다.

※ 2027년도 대회부터 종목별 메달 가산점 반영

나. 기권·몰수·불출장한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경기 몰수는 경기단체에서 결정하되 채점 여부는 경기단체에서 작성한 사유서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frac{\text{1부·2부별 득점합계}}{\text{종별·체급별·세부종목별 득점합계}} \times \frac{\text{당해 1부·2부의}}{\text{종별·체급별 획득점수}} \times 100 = \text{당해 시·군의 종합득점}$$

라. 종합채점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마.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하여 배점한다.

바. 본 대회의 시범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순위 결정방법

가. 1부·2부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나. 1부·2부별 종합득점이 동점인 경우

- 1)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2)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3)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4) 3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경기자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당해 연도 2월 말(제72회: 2026. 2. 28.)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할 수 있다.

① 신규 선수 및 신규 팀의 경우 당해 연도 도민체전 이전·후 최소 1회 종목별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미참가 시 차기 대회 해당 종목 참가 불가 단, 특이사항(부상·임신·군입대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단,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참가자는 제한하지 않음)

② 선수 등록을 한 후 중앙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공백기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새로이 전문선수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장팀 선수는 최저 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

④ 선수 계약기간: 당해 연도 2. 28. 이전 ~ 12. 31.(연 최저임금 적용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계약기간 중 군 입대 선수의 경우 대회 개최 이전 전역 시 계약기간 예외 인정

2) 다음 종목은 단일소속(직장운동경기부)으로만 구성하여 참가신청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검도, 배드민턴, 볼링 등 9개 종목) ※골프는 직장팀 구성 불가

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학업을 위해 대학(주·야간)에 재학 중일 경우 전국체전에 대학부 종별이 없는 종목에 한하여 직장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수영, 소프트테니스(여), 배구(여), 역도, 검도(여), 궁도, 골프, 보디빌딩, 우슈, 사격, 당구, 농구, 바둑, 야구, 산악, 댄스스포츠)

4) 전년도(전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직장팀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5) 직장운동경기부(신규)로 해당 시·군에 최소 2년간 계약유지 및 선수 활동을 한 경우,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로 출전 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적용

나.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고시된 기관) 및 일반기업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26개 정식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기본점수 배점 없음

*단, 정식종목이라도 대회 미개최 시 지도자·선수 전원 기본점수 부여

*단, 도민체전 경기종목 외 직장팀의 선수가 도민체전 정식종목(동일 종목 내 다른 세부 종목 등)으로 출전할 경우, 해당 선수 기본점수 미인정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2) 정식종목 외 동·하계체전 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기본점수 배점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획득 선수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

구 분		기본 점수	가산점 배점			비고
			전국체전 (동·하계)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대비 %)		
개인	1위	120점	80점	240점(300%)	160점(200%)	
	2위		40점	80점(200%)	60점(150%)	
	3위		20점	20점(100%)	20점(100%)	
	4위이하		10점	-	-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	1위		120점	360점(300%)	240점(200%)	
	2위		60점	120점(200%)	90점(150%)	
	3위		40점	40점(100%)	40점(100%)	
	4위이하		10점	-	-	

※ 육성점수의 경우, 재직선수 및 신규 영입선수에 한함

※ 메달 중복 획득 시 메달별 점수 부여. 단 4위 이하는 중복 점수 부여 하지 않음

※ 동계체전은 당해 연도 실적을 적용하며, 하계체전은 전년도 실적을 적용함

※ 일반기업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점수 반영 비율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형태	육성점수 반영 비율
운영비/선수영입비/훈련비 지원	100%
그 외 지원(일회성/각종지역행사)	50%

- 3) 육성점수는 상한선인 5,0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5,000점 초과 시 최고 시·군의 점수 비율로 육성점수를 배점하고 타 시·군에도 적용한다.

⇒ 육성점수 = 기본점수 + 가산점(전국체전 + 올림픽, 아시안게임)

예시) A시 육성점수가 6,000점일 경우

[6,000점 = 기본점수 + 가산점(전국체전 + 올림픽, 아시안게임)]

※ A시는 육성점수가 상한선인 5,000점이 되며 아래의 비율계산법에 의해 타 시·군은 총 획득한 육성점수의 83.3%만 적용된다.

☆ 비율계산법: 5,000점(상한선) ÷ 6,000점(A시 육성점수) × 100% = 83.3%

다. 구비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계약종료일 명시)
- 2)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 3) 일반기업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 1부(해당 팀만 제출)
- 4)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1부(대진추첨 전까지)
- 5) 타 시·도 영입선수는 전년도 전국체전 참가 증빙서류 1부
(전국 동·하계체육대회 홈페이지 출력본)
-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증빙서류 1부(해당 팀만 제출)
- 7)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1부(23세 이하 모든 선수)
- 8) 증빙서류는 원본 1부만 각각 분리하여 제출
(26개 정식종목 1부, 정식종목 외 육성종목 1부)
- 9)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참가확인서 1부(해당 팀만 제출, 대회 종료 후 당해 연도 내 추가 제출)

6.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경기도민으로서 아마추어 선수에 한한다.

나. 만 19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만 19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기준 - 2008. 1. 1.(포함)이후 출생자)

다. 고등학교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고등부 선수는 학교와 G-스포츠클럽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G-스포츠클럽 시·군 소재지가 다를 경우, G-스포츠클럽 소재지를 우선으로 한다.

2)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육상종목 선수는 출신 중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2-1) 경기체육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육상종목 선수는 출신 초등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단, 타 시·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현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한다.

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등록기준지 참가자: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등록된 경기도 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2025. 2. 28.(포함)까지 경기도 내 등록기준지 변경 시 현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 참가일까지 계속하여 등록기준지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소지 참가자: 2025.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 말소 시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수 참가

- 3) 중앙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2026년) 엘리트 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 참가 시 중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거나 현재 주소지 시·군에서 8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 말소 시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3-1) 상무팀 소속 군인은 전년도(전회)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 당해 연도(금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3-2) 전년도(전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실업(일반) 선수 및 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일반) 선수는 당해 연도(금회)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다.
- 4) 경기도 내 축구 K3·K4(남자), WK(여자) 리그팀과 독립야구팀은 등록된 연고지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음).
※ 단일팀 잔여 선수는 주소지·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없다.
- 5) 경기도 독립야구팀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연고지(단일팀)로 참가할 수 있다.
- 6)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 1
※ 육상 고등부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가능
(재학증명서, 임시학생증 불가)
- 7)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중 신청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시·군으로 참가한다. 선수 1명의 출전동의서를 2개 시·군 이상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선수의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 8)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 중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도종목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 9) 동일인이 1개 경기 외에 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 유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등 타 종목에 참가할 경우

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각 징계 조치에 따른 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기준일은 참가신청 시작일로 한다.

- 1) 적용대상: 23세 이하 모든 선수(2003년 이후(포함) 출생자)
- 2) 학교폭력예방법 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경기) 참가 및 등록 제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 조치		참가 및 등록 제한 기간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개월
3호(교내봉사)		5개월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8개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10개월
8호(전학)		12개월
9호 (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10년
	그 외의 경우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 3) 적용대상 모든 선수는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2026. 3. 5.(목) 18:00까지

- 1) 시·군 종목단체 참가신청: 2026. 2. 25.(수) 09:00 ~ 2026. 3. 3.(화)
- 2) 시·군체육회 참가신청(수정 및 확인): 2026. 2. 25.(수) ~ 2026. 3. 5.(목) 18:00

※ 신청마감 이후 수정 불가

나. 방 법: 시·군별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다.

다. 신청요령

- 1) 종목별 참가요령에 따른다(참가신청 마감 이후 세부내용 변경 불가).
- 2) 참가신청서 주소란에 등록기준지 또는 현주소를 기재한다.
(주소지, 등록기준지 등 참가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할 것)
- 3) 참가신청서는 대회관리시스템에서 작성 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라.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 (가) 원본 1부(총괄표, 참가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초본 사본 제출 인정(단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이며 열람용·사진 파일 미인정)
- (나) 사본 2부(총괄표 및 참가신청서/ 구비서류 제외)

2) 구비서류

- (가) 고등부(육상)에 참가하는 선수
 - 학교장 발행의 재학증명서 1부(사진 첨부)
 - 경기체육고등학교 재학생: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기체육중학교 졸업 후 경기체육고등학교 재학생: 초등·중등 졸업증명서 각 1통
- (나) 일반부에 참가하는 현역선수
 - 등록기준지 참가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소지 참가자: 주민등록초본 및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K3·K4·WK, 독립야구팀: 2025년도 선수등록 현황 각 1부
- (다)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등록기준지 참가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소지 참가자: 주민등록초본 1부(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사격종목 참가자: 총포허가증 1부
- (라) 23세 이하 모든 선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1부
- (마) 제출서류의 보완은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8.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3. 6.(금) 09:00 ~ 3. 13.(금) 15:00/ 8일간

나. 조 치: 참가신청 마감 후 사전열람 기간 동안 시·군 책임자는 타 시·군의 참가신청서를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경기도체육회는 접수된 내용을 조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 또는 (참가자격에 대한)소청은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단,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게임몰수 처리하며, 참가신청 마감 이후 주소지 이전(타 시·도 및 시·군) 현장 적발 시 실격 처리한다.

다. 열람확약서 제출: 2026. 3. 13.(금) 15:00까지

9. 시·군 대표자회의 ※일자 및 장소 별도 공지

가. 일 자: 2026. 3월 중 [예정]

나. 장 소: 광주시

다. 안 건

-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경기장 질서 확립
- 2) 종목별 대진추첨 등

10. 기타사항

가. 참가신청 한 선수의 군입대, 출산(임신), 부상(사망), 프로리그 진출 시 대회 개막 7일전[2026. 4. 9.(목) 18:00]까지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및 진단서(2차 병원 이상)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 단, 사망의 경우 대회 전일까지 교체가능

※ 사전경기 종목은 종목별 대회개최 7일 전 진단서 제출

※ 진단서는 참가신청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나. 참가신청 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선수를 교체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대회 개막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다. 경기장에서 부상선수가 발생한 경우, 증상이 경미할 때에는 현장에 배치된 의료반이 조치하나 그 외 심각한 부상의 치료 등은 해당 시·군에서 조치한다.
- 라. 시·군 선수단은 반드시 스포츠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참가요강 변경사항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사항

○ 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참가 요령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 직장운동경기부는 ~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 참가할 수 있다. ① 신규 선수 및 ~ 한다. ※ 미참가 시 차기 대회 해당 세부종목(종별) 참가 불가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 직장운동경기부는 ~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 참가할 수 있다. ① 신규 선수 및 ~ 한다. ※ 미참가 시 차기 대회 해당 종목 참가 불가 단, 특이사항(부상·임신·군입대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 직장운동경기부는 ~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 참가할 수 있다. ② 중앙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는 ~ (이하생략)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 직장운동경기부는 ~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 참가할 수 있다. ② 선수등록을 한 후 중앙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공백기간)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 (이하생략)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 직장운동경기부는 ~ 참가한다. 1) ~ 4) (생략) 5) <신 설>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 직장운동경기부는 ~ 참가한다. 1) ~ 4) (생략) 5) 직장운동경기부(신규)로 해당 시·군에 최소 2년간 계약유지 및 활동을 한 경우,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로 출전할 수 있다. ※2027년부터 반영
	5. 직장운동경기부 나. 시·군(청, 체육회, ~ 기관) 및 일반기업 ~ 주어진다. 2) 정식종목 외 ~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기존점수 배점 ※ 신설	5. 직장운동경기부 나. 시·군(청, 체육회, ~ 기관) 및 일반기업 ~ 주어진다. 2) 정식종목 외 ~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기존점수 배점 ※단, 도민체전 경기종목 외 직장팀의 선수가 도민체전 정식종목(동일 종목 내 다른 세부 종목 등)으로 출전할 경우, 해당 선수 기본점수 미인정

참가 요령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구비서류 (4대보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구비서류 (4대보험, 재직증명서 등)
	6.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u>육상종목 고등부 선수는 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u> 한다.	6. 참가자격 다. 고등학교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u>고등부 선수는 학교와 G-스포츠클럽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u> <u>다만, 학교와 G-스포츠클럽 시·군 소재지가 다를 경우, G-스포츠클럽 소재지를 우선으로 한다.</u>
	6. 참가자격 라.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등록기준지 참가자: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 참가할 수 있다. 2) 주소지 참가자: 2025.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참가자격 라.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등록기준지 참가자: 2023. 2. 28.(포함) 이전부터 ~ 참가할 수 있다. <u>이 경우, 대회 참가일까지 계속하여 등록기준지를 유지하여야 한다.</u> 2) 주소지 참가자: 2025. 2. 28.(포함)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u>계속하여</u>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7. 참가신청 라. 제출서류 (마) 제출서류의 보완은 <u>대진추첨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u>	7. 참가신청 라. 제출서류 (마) 제출서류의 보완은 <u>이의신청 마감일 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u>
	8. 사전열람 및 이의 신청 나. 조치: 참가신청 마감 후 ~ 소청은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단, 제출된 서류의 ~ 처리한다.	8. 사전열람 및 이의 신청 나. 조치: 참가신청 마감 후 ~ 소청은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단, 제출된 서류의 ~ <u>처리하며, 참가신청 마감 이후 주소지 이전(타 시·도 및 시·군) 현장 적발 시 실격 처리한다.</u>

○ 종목별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구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u>나. 당해연도 대한배구협회 동호인 및 선수 등록을 필한 자</u>																
궁도	4. 경기방법 마. <u>개인전은 동점일 경우 각궁, 죽시를 우선으로 한다. 장비가 동일할 경우 비교전(1차 단순, 2차 매시)을 실시한다.</u>	4. 경기방법 마. <u>동점일 경우 각궁, 죽시를 우선으로 한다. 장비가 동일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u> <u>- 개인전: 비교전(1차 단순, 2차 매시)</u> <u>- 단체전: 선사시수로 등위 결정</u>																
보디 빌딩	3. 체급 - 여자일반부: <u>보디피트니스</u>	3. 체급 - 여자일반부: <u>비키니</u>																
우슈	1. 종별: 남자일반부	1. 종별 가. 투로: 남자일반부 <u>나. 산타: 남자일반부(고등부 포함)</u>																
사격	6. 기타사항 가. ~ 나. (생략) <u>다. (신설)</u>	6. 기타사항 가. ~ 나. (생략) <u>다. 「총포·화약 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총기와 탄약은 반드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u> <u>- 총기 거치대에는 ‘총기’만 거치(본인 시야에 있어야 함)</u> <u>- ‘탄약’은 반드시 사용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야 한다.</u>																
당구	3. 참가종목 및 참가 인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참가종목</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캐 롬</td><td>3쿠션 (남/여/ 혼성)</td><td><u>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혼성 출전 가능</u></td></tr> <tr> <td>3쿠션 (단체)</td><td><u>중복출전가능</u></td></tr> </tbody> </table>	참가종목		비고	캐 롬	3쿠션 (남/여/ 혼성)	<u>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혼성 출전 가능</u>	3쿠션 (단체)	<u>중복출전가능</u>	3. 참가종목 및 참가 인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참가종목</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캐 롬</td><td>3쿠션 (남/여/ 혼성)</td><td><u>3쿠션 종목에 한해 중복출전 가능</u></td></tr> <tr> <td>3쿠션 (단체)</td><td></td></tr> </tbody> </table>	참가종목		비고	캐 롬	3쿠션 (남/여/ 혼성)	<u>3쿠션 종목에 한해 중복출전 가능</u>	3쿠션 (단체)	
참가종목		비고																
캐 롬	3쿠션 (남/여/ 혼성)	<u>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혼성 출전 가능</u>																
	3쿠션 (단체)	<u>중복출전가능</u>																
참가종목		비고																
캐 롬	3쿠션 (남/여/ 혼성)	<u>3쿠션 종목에 한해 중복출전 가능</u>																
	3쿠션 (단체)																	
야구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정규 7이닝 - 세부 규정 <u>GBSA</u> 규정 참조) 4. 경기방법 가. ~ 다. (생략) <u>라. (신설)</u>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정규 7이닝 - 세부 규정 <u>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u> 규정 참조) 4. 경기방법 가. ~ 다. (생략) <u>라. 우선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시 추천으로 승패를 결정한다.</u>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육 상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100m	○	○	○	○
200m	○	○	○	○
400m	○	○	○	○
800m	×	×	○	○
1,500m	○	○	○	○
5,000m	○	○	○	○
400mR	○	○	○	○
1,600mR	○	○	○	○
1,600mR(Mixed)	○		○	
8종목	8	8	9	9

나. 필드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높 이 뛰 기	○	○	○	○
멀 리 뛰 기	○	○	○	○
포 환 던 지 기	○	○	○	○
창 던 지 기	○	○	○	○
4종목	4	4	4	4

다. 마라톤 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10km(남·여)	×	×	○	○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시·군별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인 이내
(단, 릴레이는 제외)

나. 10km마라톤은 시·군별 남·여 각 5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트랙, 필드의 경기진행은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나. 마라톤의 경기진행은 1부, 2부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한다.
(1부, 2부를 구분해서 채점)

다. 10km 마라톤은 1971년 포함 이후의 출생자만 참가할 수 있다.

※ 예) 1971년생, 1972년생, 1973년생

라. 10km 마라톤은 제한 시간 내 완주한 선수의 순위로 결정한다.

※ 마라톤경기 제한시간: 남자(10Km) - 45분
여자(10Km) - 55분

5. 채점방법

가. 트랙, 필드, 마라톤을 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분리 채점한다.

나. 트랙, 필드는 세부종별로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한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다. 마라톤의 채점은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 되며, 최하위 시·군이 된다. 즉,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배점 한다.

2. 수 영

1. 종별 및 경기종목

종 목		일반부(대학생 포함)
		남·녀 공통
경 영	자 유 형	50m, 100m, 200m
	배 영	50m, 100m
	평 영	50m, 100m
	접 영	50m, 100m
	계 영	200m
	혼 계 영	200m
	개 인 혼 영	200m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시·군별 1명 2종목 이내,
1종목 2명 이내

4. 경기방법: 50m 경기는 예선 경기를 실시하며, 100m 경기부터
타임레이스로 실시한다.(단, 8명 또는 8팀 이하 출전 시
예선 경기 없이 결승 경기를 실시한다.)

5. 기타사항: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표시 없이 참가하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6. 채점방법: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한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3. 축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8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남자는 전·후반 각 35분, 여자는 전·후반 각 25분 토너먼트로 경기한다.

나.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한다.

다. 결승전 무승부 시 연장전 실시, 연장전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한다.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4. 테 니 스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2명 이상 4명 이내

4. 경기방법: 토너먼트식 단체전(2단식 1복식)

(단식, 단식, 복식 순서로 경기함)

※ 진행: 세트올(1:1) 매치타이브레이크를 적용함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5. 소프트테니스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국제식 2복식 1단식 2선승제

- 복식: 7회 게임

- 단식: 5회 게임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6. 배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당해연도 대한배구협회 동호인 및 선수 등록을 필한 자

3. 참가인원

가. 남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나. 여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남자, 여자 - 6인제

나. 토너먼트식 경기(3판 2승제)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7. 탁 구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극동식 5단 2복 - 11점 5세트, 3세트 선승제)
- 나. 경기진행 시간이 2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5. 기타사항

- 가.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 뒷면 중앙에 각자 이름표(한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 규 격: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 색 상: 바탕 흰색, 글자 검정색
- 나.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을 금지하며, 팀 간 동일 색상 경기복 착용 불가

6.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8. 복싱

1. 종 별: 남자일반부

2. 체 급

체 급		체 중	비 고
1	라 이 트 플 라 이 급	49kg까지	
2	플 라 이 급	52kg까지	
3	밴 텀 급	56kg까지	
4	라 이 트 급	60kg까지	
5	라 이 트 웰 터 급	64kg까지	
6	웰 터 급	69kg까지	
7	미 들 급	75kg까지	
8	라 이 트 헤 비 급	81kg까지	
9	헤 비 급	91kg까지	
10	슈 퍼 헤 비 급	+91kg이상	

3.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참가연령 제한 (기준: 1986년 포함 이후 출생자 참가 가능)

다. 경기도복싱협회에 등록된 선수(선수증 소지자)

4.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체급 1명

5. 경기방법: 3분 3회전,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6.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9. 역 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시범)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순	남 자		여 자		비 고
	체 급	체 중	체 급	체 중	
1	61 kg 급	61 kg 까지	64 kg 급	64 kg 까지	
2	67 kg 급	67 kg 까지	76 kg 급	76 kg 까지	
3	73 kg 급	73 kg 까지	+ 76 kg 급	76 kg 초과	
4	81 kg 급	81 kg 까지	-	-	
5	89 kg 급	89 kg 까지	-	-	
6	96 kg 급	96 kg 까지	-	-	
7	109 kg 급	109 kg 까지	-	-	
8	+ 109 kg 급	109 kg 초과	-	-	

4.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총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각 체급 1명까지 신청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인상, 용상 및 합계(인상+용상) 종목별 경기로 하여 각각 시상 및 채점한다.

6. 기타사항

- 가. 선수는 계체 시 신분증(사진 포함)을 제출해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미제출 시 참가 불가)
- 나. 체급 변경은 감독자 회의에서만 가능(하체 불가능)
- 다. 감독자 회의는 경기장에서 개최하고 경기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함
- 라. 계체 전 예비 저울로 체중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식 계체 시작 후 예비 계체를 위해 본 저울은 사용할 수 없음. 공식 계체는 1회로 한정되며, 계체 시 미달 또는 과체중인 경우 계체탈락으로 인정함

7. 채점방법

- 가. 체급별 참가자 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합계는 8위까지 채점하되, 9명 이상 출전할 경우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다.
- 나. 인상, 용상 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한다.
예) 8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합계 배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인상, 용상 배점	3 점	2 점	1 점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0. 씨름

1. 종 별: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급 및 참가인원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개인전은 각 체급별 정선수 1명

나. 단체전 3체급 중 경·중량급은 정선수 2명, 후보 1명, 무제한급은 정선수 1명

개인전		단체전	
구 분	체 급	구 분	체 급
경 장 급	-75kg	경량급	85kg이하 (정선수 2명, 후보 1명)
소 장 급	-80kg		
청 장 급	-85kg		
용 장 급	-90kg	중량급	105kg이하 (정선수 2명, 후보 1명)
용 사 급	-95kg		
역 사 급	-105kg		
장 사 급	-140kg	무제한급	140kg이하(정선수 1명)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및 3체급 단체전으로 한다.

나. 개인전은 3전 2선승제로 경기시간은 각 1분으로 한다.

단체전은 개인전에 참가한 선수만 출전하되, 팀전 5판 3선승제로 한다
(단, 개인간은 3판 2선승제로 한다.).

다. 단체전 후보선수는 신청한 체급에 한하여 부상이 발생한 선수에 대해 교체한다. 단, 경기장에 파견된 의무요원이나 전문의사의 진단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다.

라. 무승부일 경우 대한씨름협회 규정에 따른다.

5. 기타사항

- 가. 모든 선수는 자기 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 체급 이하 체급에는 참가할 수 없다.
- 나. 단체전 출전팀은 계체 후 출전 순위표를 작성하여 대회운영본부에 제출 하되 미제출 팀은 실격처리 된다.
- 다. 단체전 3체급 5명 선수 계체 확인 후 부상선수가 발생 시 1명 결원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

6.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2명(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2 점	11 점	9.5 점	6.5 점	2.5 점
명(팀)수	1(팀)명	1(팀)명	2(팀)명	4(팀)명	4(팀)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1. 유 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시범)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체급별 선수 1명

4. 체 급

남 자	여 자	인 원
-60kg급	-52kg급	각 체급별 1명
-66kg급	-57kg급	
-73kg급	-63kg급	
-81kg급	-70kg급	
-90kg급	+70kg급	
-100kg급		
+100kg급		

5.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나.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 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다. 경기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

라.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도복 앞면 왼쪽에 소속, 뒷면 중앙에 성명을 필히 부착할 것 (도복은 청색, 백색 두 가지를 준비하되 대한유도회가 공인하는 유도복을 착용하여야 함)

6. 채점방법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2. 검 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남자일반부: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상 9명 이내

나. 여자일반부: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3명 이상 7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선수 순위는 매경기마다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경기 개시 20분 전까지 팀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시간: 남자부(4분), 여자부(4분)

라. 무승부일 경우 대표전을 하되, 제한시간 없이 단판승부로 한다.

5. 채점방법 :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1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3. 궁 도

1. 종 별: 일반부

2. 참가자격

-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 나. 대한궁도협회에 당해 등록된 선수
- 다. 남·여 혼성 참가 가능

3. 참가인원

-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8명 이내
- 나. 각궁 및 개량궁 모두 참가할 수 있다. 단, 각궁은 5명(후보 1명 포함) 이상, 개량궁은 3명 이내로 하며, 각궁 선수에 한하여 경기 당일까지 후보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4. 경기방법

-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 나. 단체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 6명의 성적합계로 단체전 순위를 정하되, 단체전 기록합계가 동점일 경우 비교전을 실시한다. 1차 단순 비교, 2차 매시비교로 순위를 정한다.
- 다. 시·군별로 1명씩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1명이 5순(1순 5발)을 발사한다.
- 라.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에 참가한 전 선수의 기록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 마. 동점일 경우 각궁, 죽시를 우선으로 한다. 장비가 동일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전: 비교전(1차 단순, 2차 매시)
 - 단체전: 선사시수로 등위 결정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개인순위 3위까지 배점한다(1위 3점, 2위 2점, 3위 1점).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4. 배 드 민 턴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 이상 7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전종별: 2단식, 2복식, 1단식 - 3선승제)

나. 모든 경기는 3게임 21점 랠리포인트제로 실시한다.

다. 유니폼 티셔츠 뒷면 상단에 소속 시·군명(높이 5cm)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라. 복식 파트너와 같은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마. 유니폼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또는 치마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바. 경기 복장 위배 시 경기를 할 수 없다.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5. 태 권 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체 급

구분	남 자 부		여 자 부		비고
	체급	체중	체급	체중	
1	-54kg급	- 54kg까지	-46kg급	- 46kg까지	
2	-58kg급	54초과 58까지	-49kg급	46초과 49까지	
3	-63kg급	58초과 63까지	-53kg급	49초과 53까지	
4	-68kg급	63초과 68까지	-57kg급	53초과 57까지	
5	-74kg급	68초과 74까지	-62kg급	57초과 62까지	
6	-80kg급	74초과 80까지	-67kg급	62초과 67까지	
7	-87kg급	80초과 87까지	-73kg급	67초과 73까지	
8	+87kg급	87kg초과	+73kg급	73kg초과	

3. 참가자격

가. 협회에서 인정한 유단자

나.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4. 참가인원: 각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토너먼트식 개인전

6. 경기시간: 부별 경기는 2분 3회전(중간휴식 1분). 단, 동점으로 3회전 종료시 1분간 휴식 후, 썬데스 오버타임 회전(2분 1회전의 제4회전)을 실시한다.

7.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6. 볼 링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단체전 5인조 4게임으로 실시한다.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경기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의 최하위 1부·2부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 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7. 골 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프로페셔널 참가자 제외(프로선수, 골프교습 등 대가 및 보수를 받는 자)

※ R&A 아마추어 자격 규칙 제2조(아마추어 골퍼)

다. 연령제한 참가(기준: 1996년 포함 이전 출생자)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

4. 경기방법: 1부·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가. 1개팀 구성은 4명으로 하고, 3명의 최저 스코어를 합산한다.

나. 스트로크플레이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다.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 경기 선수 중 기록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라. 참가선수가 3명 미만일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경기용 사용구는 R&A에서 승인된 국제 공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 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18. 보 디 빌 딩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시범)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남 자			여 자
체 급		체 중	
1	플 라 이 급	60kg까지	비키니
2	밴 텀 급	65kg까지	
3	라 이 트 급	70kg까지	
4	웰 터 급	75kg까지	
5	라이트 미들급	80kg까지	
6	미 들 급	85kg까지	
7	라이트 헤비급	90kg까지	
8	헤 비 급	90kg이상	

4.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총 9명(남 8, 여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자의 경우, 각 체급 3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가. 경기는 세계보디빌딩연맹과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나. 월체는 한 체급만 인정(상체는 인정되나 하체는 불가)

다. 자유포즈 음악은 공동 음악으로 한다.

라. 계측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 지워질 수 있는 탄(칼라크림) 및 브론저의 사용은 금지함(인공 착색이나 셀프 테닝 제품은 허용) 테닝 시 광택, 광채, 반짝거리는 메탈릭 펄 및 황금빛 색의 사용 역시 엄격하게 금지되며 사용하는 테닝 로션에 섞여 있어도 허용되지 않음. 또한 적당한 보디 오일과 보습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오일의 과도한 사용 또한 엄격하게 금지함.

※ 개최 시·군의 대관 등의 사유로 적용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최 시·군의 요청으로 무탄으로 진행 할 수 있으며, 무탄 대회에서는 프로탄, 오일, 보습제 등 일체 제품 사용을 금지함.

※ 금지 제품 사용 현장 적발 시 실격처리.

6. 채점방법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나.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19. 우 슈

1. 종 별

가. 투로: 남자일반부

나. 산타: 남자일반부(고등부 포함)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하되, 우수단증 소지자

3. 참가종목

가. 투로: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나. 산타: 5체급(-56kg, -60kg, -65kg, -70kg, -75kg)

4. 참가인원

가. 투로: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1) 감독, 주무, 코치 외 시·군별 4명 이내

2) 세부종목별 1명이 참가하며 한 세부종목에 한하여 2명이 참가할 수 있음

나. 산타: 코치 외 체급별 1명

5. 경기방법: 대한우슈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투로와 산타경기에 배점된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한다.

가. 투로(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나. 산타종목의 채점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해 배점한다.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명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0. 사 격

1. 종 별: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하되 당해 연도 경기도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자로서 개인 총포소지허가자(단, 당해 연도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선수등록을 마친 자)

나. 남녀혼성도 참가 가능

다. 중앙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직장운동부는 당해 연도 경기도 소속으로 등록된 해당 시·군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3. 참가종목: 트랩(개인·단체) ※ 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음

4.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3명 이상 4명 이내

5. 경기방법: 대한사격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가. 단체전: 4명이 출전하여 상위 기록 3명의 기록합계로 순위를 정함

나. 개인전: 별도의 경기를 갖지 않고, 단체전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기록에 따라 결선 경기를 거쳐 개인 1, 2, 3위를 결정함

6. 기타사항

가. 경기 개시 전 경찰관 입회하에 개인 총포소지허가증 확인(총포소지허가 진행 중인 자는 접수증으로 대체)

나. 총기 양도양수 금지

다. 「총포·화약 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총기와 탄약은 반드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총기 거치대에는 ‘총기’만 거치(본인 시야에 있어야 함)

- ‘탄약’은 반드시 사용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야 한다.

7.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1. 당 구

1. 종 별: 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하되 중앙회원종목단체에 경기인 등록(전문체육 또는 생활체육)이 된 자에 한하며, 캐롬과 포켓볼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3. 참가종목 및 참가인원: 감독, 주무, 종목별 코치 외 선수 11명 이내

참가종목		출전인원	비고
캐롬	1쿠션(개인전)	1명	남녀구분 없음
	3쿠션(남/여/혼성)	2명	3쿠션 종목에 한해 중복출전 가능
	3쿠션(단체)	4명	
포켓볼	포켓9볼(남/여/혼성)	2명	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포켓9볼 혼성 출전 가능
	포켓10볼(남/여)	2명	

4. 경기방법: 토너먼트 개인전 및 단체전(2단식 1복식)
 - 가. 대한당구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 나. 캐롬종목 토너먼트 단체전은 매 경기 시작 20분 전에 단식, 복식 선수 명단을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채점방법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1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2. 농 구

1. 종 별: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12명 이내
4. 경기방법
 - 가. 대한농구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 나. 토너먼트 경기 방법
 - 다. 7분 4쿼터 경기로 한다.
 - 라. 연장전은 3분씩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한다.
5. 기타사항: 모든 참가선수는 유니폼 앞면에 소속 시·군 밑에 작은 번호를 부착하며, 뒷면에 큰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6.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3. 바 둑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개인전, 단체전)

나. 여자일반부

다. 혼성페어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한다.

3. 참가종목 및 참가인원: 감독, 주무, 종목별 코치 외 선수 8명 이내

참가종목		출전선수	비고
남자일반부	개인전	1명	
	단체전	3명	단체전은 후보선수 1명 포함(4명)
여자일반부	개인전	1명	
혼성페어전	남, 여 혼성	2명	

4. 경기방법: 토너먼트 개인전 및 단체전

가. 대한바둑협회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나. 모든 종목은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단체전은 매 경기 시작 20분 전에 선수명단을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매 경기당 30분 초읽기 30초 3회로 진행한다.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명(팀)수	1(팀)명	1(팀)명	2(팀)명	4(팀)명	1(팀)명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4. 레슬링

1. 종 별: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종목(양형 출전가능)
 - 가. 그레코로만형: 60, 67, 72, 77, 82, 87, 97, 130kg(8체급)
 - 나. 자유형: 57, 61, 65, 70, 74, 86, 97, 125kg(8체급)
4. 참가인원: 감독, 코치, 주무 외 각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 가. 국내경기 토너먼트 대진 방식으로 3분 2회전 실시한다.
 - 나. 대한레슬링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1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5. 야 구

1. 종 별: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감독, 주무, 종목별 코치 외 선수 18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정규 7이닝-세부규정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참조)

나.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치기로 한다.

다. 결승전 무승부 시 연장전(1이닝 추가)을 실시하며, 연장전도 무승부 시 승부치기로 한다.

라. 우천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울 시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5. 채점방법: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1 팀

(단,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6. 산 악(시범종목)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세부종목

가. 스포츠클라이밍 리드

나.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3.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4.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종목별 3명 이내

※ 1인 2종목 출전 가능

5. 경기방법

가. 리드: 개인전 기록경기 방식

나. 스피드: 개인전 기록경기(예선) 및 토너먼트(본선) 방식

6. 채점방법: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27. 댄스스포츠(시범종목)

1. 종 별: 일반부

2. 세부종목

종 목	구 분	
라 틴	3종목(C.S.R)	5종목(C.S.R.P.J)
스탠다드	3종목(W.T.Q)	5종목(W.T.Q.F.VW)

3. 참가자격: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4. 참가인원: 각 시·군별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남 4명, 여 4명 이내
(1커플 1종목 참가)

종 목		출전선수
라 틴	3종목	1팀(남, 여 각 1명)
	5종목	1팀(남, 여 각 1명)
스탠다드	3종목	1팀(남, 여 각 1명)
	5종목	1팀(남, 여 각 1명)

※ 라틴, 스탠다드 선수구성은 반드시 남,여가 커플이어야 한다.

5.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방법

나.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총포허가 관련 규정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 소지자가 지켜야 할 법령(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 소지허가 및 갱신

1)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2)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허가 관청에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2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다만, 재해·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 제2항(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위반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제1항)

나. 양도·양수 등의 제한

-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법 제21조제5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다. 총포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의 제한

-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지니거나 운반·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7조)

* 위반시 총포소지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법 제46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라. 총포의 검사

-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 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2조 제4호)

마. 허가증 관리

-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5조)

바. 도난·분실의 신고

- 총기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1항)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 제4호)

사. 허가의 반납 및 양도·양수

- 1) 허가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법 제65조 제2항)
- 2) 총기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자가 소지허가를 득한 후 양도하여야 한다.

아. 총기류 안전수칙

-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14조의2 제1항)
- 2)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7조 제3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 제1항)

경기용 총기 및 실탄의 사용 관리상의 준수사항

- 가. 사격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총기와 실탄은 대회 또는 훈련에 사용될 경우에는 진정한 스포츠용품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적인 매매·양도·증여 또는 변조 개조되는 경우에는 사회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위해물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입니다.
- 나. 대회와 훈련에 사용하더라도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도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제재가 수반되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 총기·실탄의 사용 관리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법령상 준수사항(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실탄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주소지 또는 실탄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시행규칙 제31조)
 -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 총기·실탄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 제3호)
- 총기·실탄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항)
 -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3조)
- 실탄사용자는 사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한 실탄의 양도·양수 및 사용대장은 총기를 보관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63조 제1항, 시행령 제81조)
 -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

○ 기타사항

- 사용 후 발생한 탄피는 최대한 회수하여 실탄보관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각 팀별 총기·실탄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총기·실탄 관리의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